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824

발의연월일: 2024. 11. 22.

발 의 자: 박해철 • 박홍배 • 송옥주

문대림 • 최민희 • 송재봉

이용선 · 정혜경 · 유건영

이용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는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전면 적용,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이와 같은 적용방식 때문에 고용인을 둔 사업체 중 60%를 차지하는 4명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로 남게되어, 근로자의 최저기준을 정하는 기본법으로서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면서도,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준수할 만한 여건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사업장의 현실과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법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 보호를 좀 더 두텁 게 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 법률 제 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을 "모든"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까지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u>상</u>	제11조(적용 범위) ①모
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	<u> </u>
<u>하는 모든</u> 사업 또는 사업장에	<u><단서 삭제></u>
적용한다. <u>다만, 동거하는 친족</u>	
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	
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	
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u><삭 제></u>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	
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u><삭 제></u>
<u>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u>	
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u>정한다.</u>	